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3가단509103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2024나203675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3가단5091032 판결

전문

원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허성국

변론 종결 2024. 5. 14.

판결 선고 2024. 7. 9.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259,315원 및 그 중 272,772,920원에 대하여 2022. 12. 24.부터 2023. 6. 3.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9.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61,612,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61,6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피고 주식회사 A,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 피고 주식회사 A, B: 주문 제1항과 같다.

○ 피고 C: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9.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99,612,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99,6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회사가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D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에 관하여 2건의 수출신용보증약정, 즉 ① 2022. 7. 28. 보증한도액 1억 3,500만 원, 보증기한 2023. 8. 2.로 하는 신용보증약정, ② 2022. 8. 19. 보증한도액 1억 3,500만

원, 보증기한 2023. 9. 9.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하였다. 피고 B은 피고회사의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 2022. 10. 17. 피고회사의 대출금 연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22. 12. 23. D은행에 272,772,92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보증약정에 따른 채권보전비용 잔액은 2,486,395원인바, 2022. 12. 23.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회사 및 피고 B에 대해 가지는 구상채권은 275,259,315원(272,772,920원+2,486,395원)이고, 그 중 대위변제금 272,772,92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2. 12. 24.부터 연 10%이다.

○ 한편 피고 B은 2022. 9. 20.(보증사고 발생 약 1개월 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C에게 1억 8,2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C은 2022. 9. 30. 종전 근저당권(2016년경 D은행 설정)의 피담보채무액 82,388,000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 피고 B은 피고회사의 실질 운영자인데 이미 2022. 6.경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22. 9. 20.경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즉 ① 소극재산의 경우, 약 5억 7,300만 원이다(D은행 담보대출 약 8,200만 원, 기업은행 보증채무 6,000만 원, E은행 보증채무 약 1억 5,900만 원,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약 2억 7,200만 원). ② 적극재산의 경우, 소극재산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제주시 토지 및 건물 지분(1/82)은 취득가액이 약 16만 원이다. 울산아파트 지하호실(7.68m²)은 거래가액이 약 790만 원이다. 영천시 F 토지는 공시가격이 약 1,514만 원이고, 나머지 영천시 소재 토지들 및 건물은 대구지방법원 G로 경매 중인데 경매청구금액 대비 감정평가액이 미달되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다.

○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인 2024. 5.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쌍방이 제출한 거래시세자료, 아파트 1층이라는 거래조건이나 매매수요 등을 감안할 때 피고 C이 확인한 시세인 1억 4,400만 원으로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기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75,259,315원 및 그 중 272,772,92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22.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송달일인 2023. 6. 3.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쌍방의 주장

①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취소 범위와 가액배상액은 99,612,000원[1억 8,200만 원(사해행위 당시인 2022. 9.경 이 사건 부동산 시가)-82,388,000원(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다. ② 피고 C: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고 C은 선의의 수익자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취소 범위와 가액배상액은 61,612,000원(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의 시가 1억 4,400만 원-위 피담보채무액 82,388,000원)이다.2)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보전채권 및 피고 B의 사해행위가 인정된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 B은 임금체불 상태에 있으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2. 10. 17. 대출금채무 연체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인 피고 C에게 채무변제를 위하여 처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3) (2) 피고 C의 선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 C의 구체적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 C은 2017. 2. 16. 피고 B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변제기: 2019. 2. 15., 약정이자: 월 120만 원(0.8%)]. 이후 갹신을 거쳐 변제기를 2023. 2. 15.로 연장하였다. ② 그러던 중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제의해서, 법무사 입회하에 매매대금을 1억 8,200만 원으로 하되 종전 대여금잔액 1억 원은 지급에 같음하고 나머지 8,200만 원은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③ 실제로는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서 계약 당일 이전등기를 하였고, 이후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는 것이다.

선의에 대해서는 피고 C이 입증하여야 한다. 비록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저렴하게 책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앞서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감안할 때,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한 채로 변제기만 연장하다가 보증사고가 발생하기 1개월 전에 매수하였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대여금채무 변제기가 2023. 2. 15.로서 약 5개월이 남아 있었음에도, 매수를 통해 변제를 받음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우선적으로 권리확보를 하였다(당시 대여금잔액 1억 원을 대금지급에 갈음했다는 것이나, 원래 그보다 많았던 원금 1억 5,000만 원이 장기간 변제되지 않았던 정황에 비추어 이 부분도 해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의 실제 거주지였음에도 대물변제 형식으로 처분된 것이고, 매매계약서(을다 제5호증)를 보더라도, 법무사 입회 표시가 있기는 하지만 총 매매대금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근저당채무인수 등 특약사항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그 형식이나 내용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3)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취소 범위와 가액배상액은 앞서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시가 1억 4,400만 원을 반영한 61,612,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61,612,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61,6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유창훈

별지

1) 원고의 2024. 5. 9.자 준비서면(4쪽)에서 소극재산으로 기재한 D은행 보증채무 2억 6,000만

원은,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제외한다.

2)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3)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